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자주하는 질문(FAQ)

I 장려금 신청 자격

1. 장려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2021학년도 국내 직업계 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이상)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적·재직·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을 선발

항목	상세요건
학적	직업계 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위탁과정 3학년 재학생(정규학기 졸업예정자) (※ 휴학·제적·자퇴·퇴학 등의 사유로 정규학기 미졸업 시, 장려금 전액 반환)
재직요건 ¹⁾	사업 기준일('21.10.1.)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자 (※ 취업예정자도 신청 가능)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요건 ²⁾	동일 기간에 취업연계 장려금과 동종의 직접일자리 사업* 미참여자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지자체 합동자침」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중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이나,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지원 제외
-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복 수혜 시 지원 제외(※상세 내용은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직업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의지가 있는 학생은 모두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화면에 있는 일반계고 위탁과정(6개월 이상)이 무엇인가요?

A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진로를 변경하여 위탁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6개월 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장려금 신청 당시, 중소·중견기업에 종사 중이어야만 신청 가능한가요?

A

☞ 아닙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2.11.30. 이전에 취업(재직) 보고를 하여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취업(재직) 보고한 신청자를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 단, 제출기한 이전에 취업(재직) 보고를 하여도 사업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4.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대상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나요?

A

☞ 중복참여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고용장려금> 중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대상】

사업명	부처	비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은 장려금 수혜 후 의무종사 종료 시 가입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취업성공수당
장애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취업성공수당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기업벤처부	▶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사다리장학금 I유형	한국장학재단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1학년) 학생 해당

※ 중복참여 금지 기간: 장려금 지원 사업기준일('21.10.1.)로부터 의무종사기간 종료일까지

5. 장려금 신청 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였으나 최근 퇴사를 하였습니다. 추후 재단에서 심사승인이 될 경우 장려금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 사업기준일('21.10.1.)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이력이 있을 경우, 현재 퇴사를 하였더라도 장려금 수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6.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 넷째, 다섯째 두 자리 82).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네, 지원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2번)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은 제외)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록번호 넷째, 다섯째 두 자리 83에 해당하는 기업 및 (주)한국기업데이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판단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기업 또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재직 중인 기업의 업종이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 네, 가능합니다.
- 장려금 심사 시 업종 제한의 요건을 두고 있으나, 부동산업의 경우는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9. 재직 중인 기업의 업종이 '이용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 네, 가능합니다.
- 장려금 심사 시 업종 제한의 요건을 두고 있으나, 이용업의 경우는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0. 재직 중인 회사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일 경우에도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 네, 가능합니다.
- 장려금 심사 시 고용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1. 부모님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부모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려금 신청 전 부모기업 재직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발견 시 전액 반환처리)

12. 법인 아닌 종교단체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에 해당하므로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넷째, 다섯째 두 자리 89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대상기업에 해당

13.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나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이상)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중소·중견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5.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인데 소득이 낮습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 현재 규모가 작은 외국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기업 재직자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7. 2021학년도 장려금 수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장려금 지급 전 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2021학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장려금 수혜 후 사업기간 (~'22.11.30.)내 의무종사 이행(1년)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으로 한정됩니다.(※가입대상자는 개별안내 예정)

18. 이행보증(신용)보험 가입자로 선정 시 보험 가입은 수혜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2021학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이행보증(신용)보험 가입을 진행하며, 보증(신용)보험료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납부합니다. 다만, 수혜자께서는 보험 일괄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안내가 오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19. 부사관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직업 군인의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취업보고 기한(~'22.11.30.) 내 지원 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취업 후 취업보고를 할 시 장려금 심사가 가능합니다.

20. 국가장학금에 신청하였는데 중복지원에 해당 하나요?

A

☞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중복지원 금지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중복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현재 재직(취업 예정) 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명으로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공공기관, 외국법인,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등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외에도 주점업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대상 확인은 취업보고 심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주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기업규모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주점업에 종사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직 기업의 업종이 제외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재직) 및 의무종사 이행 제외 업종】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I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I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I56213	생맥주 전문점
	I56219	기타 주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J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O84111	입법기관
	O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O84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O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O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O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O84211	교육 행정
	O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O84213	환경 행정
	O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O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O84221	노동 행정
	O84222	농림수산 행정
	O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O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O84229	기타 산업 진흥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O84310	외무 행정
	O84320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O84401	법원
	O84402	검찰
	O84403	교도기관
	O84404	경찰
	O84405	소방서
	O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O84500	사회보장 행정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R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R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R91291	무도장 운영업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0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U99001	주한 외국 공관
	U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II 장려금 신청 방법

23.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본인 명의 은행발급 인증서(※발급 전 은행으로 절차 확인)를 발급 받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장려금 신청과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로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하기”(메뉴 경로 및 명칭 변경 가능)

경로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 로그인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신청하기

24. 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A

☞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서명은 제외하고 학교 담당자 서명만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5. 학교 담당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 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학적(학교, 학년 등),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26.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학교 담당자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 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학교추천 절차가 없어지면서 학적정보 확인 등을 학교 담당자 서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학교 담당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서명이 없을 시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27. 취업(재직)보고의 경우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A

☞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경우, 2022.11.30.까지 취업(재직)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이전에 취업(재직) 보고하여도 사업예산 소진 시 장려금 지급 불가

28. 장려금 신청 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A

☞ 네,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사전교육 이수는 의무사항 중 하나로 장려금 신청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사전교육: 장려금 신청 시 온라인 동영상으로 교육 진행(의무종사, 장려금 환수 및 중소기업 이해 등 교육)

29.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증빙서류는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A

☞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의 ‘붙임7.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 증명서(재단 표준 양식)’ 참고
- 위탁기관의 기관장 서명(혹은 날인)을 받은 후, 장려금 신청 시 업로드

Ⅲ 대상자 선발

30. 입사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심사 당시 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 되었을 경우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사업기준일('21.10.1.)을 포함하여 이후,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을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자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소명)

31. 장려금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장려금 심사의 경우 매달 2회 정기 심사가 진행됩니다.(※상시심사 병행)

차수	내용
1차	▶ 접수기간 : 매월 1~14일 ▶ 심사결과 발표 : 매월 말일 ▶ 지급 : 익월 첫째 주
2차	▶ 접수기간 : 매월 15~말일 ▶ 심사결과 발표 : 익월 14일 ▶ 지급 : 익월 셋째 주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심사결과 발표 및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발표 및 지급

32.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업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 가능

【제출(업로드)서류】

항 목	내 용	비 고
재직 (취업)여부 증빙서류 (재단 요청 시)	①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인정(사본 제출) ②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인정)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등 4대 사회 보험 자격 득실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업규모 증빙서류 (재단 요청 시)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중견기업등기준검 투표(사본제출) III. 『최중심사』의 ‘3. 취업(재직) 요건 심사’ 참조	※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한 신청자에 한해 추가 요청

IV 장려금 지급

33. 2020학년도 취업연계 장려금이 4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학년도에도 장려금 금액이 동일한가요?

A

☞ 아닙니다.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는 2020학년도 학생 1인당 400만 원에서 2021학년도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4. 장려금 수혜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대상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잔여사업비≥지급대상금액)인 경우 취업(재직) 정보가 확보된 신청자를 우선으로 심사하며, 필수 요건 심사통과자 전원에 대해 지급합니다.

단, (잔여사업비 < 지급대상금액)인 경우 ① 사업 기준일('21.10.1.) 이후 신청자의 중소·중견 기업 재직(취업) 시기 ② 사업 신청일 이후 신청자의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완료 시기 ③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이수자 ④ 취약계층(기초생활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⑤ 직업계고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35. 장려금 신청 당시 등록한 지급 희망 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현황에서 신청서 수정을 통해 등록한 지급 희망 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신청서 수정이 어려운 경우, 지급 희망계좌 은행명, 계좌번호를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1800-0499)로 변경 요청 바랍니다.

V 의무종사

36. 재단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지원금 수혜자입니다. 현장실습 지원금 참여 기간은 장려금 의무종사 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A

네,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인정기간 산정 시, 현장실습 지원금 참여기간은 제외됩니다.

37. 의무종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

장려금 수혜자는 사업 기준일('21.10.1.)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360일)간 의무종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종사 기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기준일 이전 취업자: 사업기준일('21.10.1.)부터 의무종사 시작
- 사업 기준일 이후 취업자: 고용보험 DB상 고용보험 취득일(근무 개시일)로부터 의무종사 시작

※ 단, 사업 기준일 이전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 기준일 이후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에서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한 날로부터 의무종사가 인정됨

38. 의무종사 완료 시 보고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상시 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종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단, 의무종사 완료 이후 1개월 이내 보고를 권장합니다.

- 상시 보고 사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재단의 정기 심사를 통해 고용보험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수혜자가 빠른 의무종사 완료를 위해 완료보고를 희망하는 경우 등
- 의무종사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소·중견기업확인서 등

※ 자세한 사항은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39.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완료 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A

☞ 네,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이행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은 의무종사 이행 심사가 완료된 수혜자의 정보를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수혜자의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사실을 증명하며, 이때 의무종사 종료일은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한 “참여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실제 의무종사 이행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40. 최초 선발 시 재직하던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었으나, 의무종사 이행 도중 대기업 등으로 규모가 변동되었습니다. 의무종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 네, 인정 가능합니다. 최초 선발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인되어 선발되었으나 기업규모가 변동되어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업에 대한 재직은 의무종사로 인정됩니다.

41. 취업연계 장려금을 수혜 후, 근무하던 기업에서 퇴사하고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의무종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 네,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에서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인정 가능합니다.

- 재취업을 1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도 사업 기준일(*21.10.1.)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에서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한 일수는 의무종사일수에 모두 합산됩니다. 또한, 합산한 일수가 의무종사 기간인 1년(360일)이 되면 의무종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한 기업의 재직 여부 및 기업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취업 여부를 증빙하여야 의무종사가 인정됩니다.

42. 국가근로 근무 기간도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 국가근로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근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 채용된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3. 군입대, 질병 등의 사유로 30개월 이내에 의무종사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원칙적으로 의무종사는 사업기준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지만 유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단으로 유예 신청하고 재단 승인 하에 최대 24개월까지 추가로 유예가 가능합니다.
- 단, 유예 사유는 아래의 4가지 사유에 한정하며 유예 신청 시 수혜자가 신용보험 가입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 승인이 가능합니다.

【의무종사 추가 유예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질병·상해	진단서(재단 심사 진행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가능)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유예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단 판단으로 유예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2021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44. 의무종사 기간인 1년(360일)을 근무하면 의무종사가 완료되는 건가요?

A

- ☞ 의무종사 기간인 1년(360일)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단에서 의무종사 이행여부 심사가 완료되어야지만 수혜자의 의무가 최종 완료됩니다.
- 재단은 정기 심사 또는 상시 심사를 통해 재직여부, 기업규모, 의무종사 이행일수 등을 종합하여 의무종사 이행 완료여부를 심사합니다. 단, 의무종사 심사 후 이행 완료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의무종사 미충족 사유 및 환수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의무종사 완료처리 취소 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5. 의무종사 확인서 발급 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확인서’는 의무종사 완료 처리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의무종사 완료 이후에도 발급되지 않는다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상담센터☎: 1800-0499

46. 취업보고를 하려는데 근무하는 회사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A

- ☞ 재직 기관 검색 과정에서 본인의 회사가 조회되지 않을 시, 직접입력을 클릭하여 작성 바랍니다.
- 직접입력시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VI 포기 및 반환

47. 장려금 수령 후 포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대학진학, 대기업 재취업,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장려금 포기신청을 할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되며 환수금은 실제 의무종사일수를 감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blacksquare \text{ 환수 금액} = (\text{장려금 전액}) \times (\text{잔여 의무종사기간}^* / \text{총 의무종사일}(1\text{년}))$$

* 잔여 의무종사기간 = 총 의무종사일수(1년) - 의무종사인정기간(일)

- 단, 타 일자리 사업 중복수혜로 인해 장려금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액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48. 포기신청을 했으나, 포기사유 해소 및 포기의사 변동으로 포기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 불가능합니다. 장려금 수혜자가 포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49. 타 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중복수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이행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동종의 직접 일자리 사업의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50. 휴학으로 정규학기에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A

☞ 네,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 휴학·자퇴·제적·퇴학 등 수학 중단으로 정규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장려금 수혜자 자격이 박탈되고 장려금이 전액 반환됩니다.

51. 장려금 반환 사유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절차 등이 진행됩니다. 반환사유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지급받은 경우(예시: 부모기업 재직보고 등)	500%
② 장려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52. 환수대상자로 선정 시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장려금 수혜자가 환수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재단은 장려금 수혜자에게 환수금, 환수기한, 환수절차 등을 통지하고, 이후 통지한 기한까지 환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신용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지연손해금,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3. 환수약정을 일시 납부로 체결하였는데 분할 납부로 변경 가능한가요?

A

☞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 기간 내에 신용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추가 가입이 필요합니다.

※ 환수약정 변경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환수관리 > 조건변경약정